

	<h2 style="margin: 0;">수련원 운영규칙</h2>	규정번호	3-1-24
		제정일자	2009.01.13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3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련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면학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양미래대학교 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수련원의 운영부서는 사무처로 하고 운영부서는 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따라 수련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조직) 수련원에는 위탁관리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수련장의 이용은 학생 및 교직원에 한한다. 다만, 학생 수련이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운영기간) 수련원은 연중 운영하며, 학생들 이용기간은 학기중으로 한다.

제6조(이용방법) ① 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신청서를 학기중에는 학생서비스센터에 방학중에는 운영부서인 사무처에 이용개시일 7일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자치기구, 동아리, 스터디그룹 등 기타 학생단체가 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현장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수련원의 1회 이용기간은 2박3일 이내로 하며, 입실 시간은 14:00, 퇴실시간은 정오 12:00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부서의장은 수련원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이용허가 취소) ① 수련장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② 주위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③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수련원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인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수련원의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 청결하게 정리·정돈하여 다음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담) ① 수련장을 이용하는 경우 난방연료 등 기타 수련장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수련원 관리 운영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